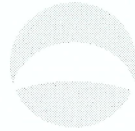


자산보관 위탁계약서(변경계약서)

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갑”이라고 함)와 주식회사 우리은행(이하 “을”이라고 함)은 “갑”이 보유하는 자산의 보관 업무(이하 “자산보관”이라 한다)를 “을”에게 위탁하고 “을”은 이를 수탁하기로 하여 「자산보관위탁계약서」(이하 “원 계약”이라고 함)을 체결하였고, 그 중 일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은 다음과 같이 「자산보관위탁계약(변경계약서)」(이하 “본 변경계약”)을 체결한다.

제1조 (용어의 정의 및 원계약과의 관계)

- ① 본 변경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 변경계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, 원 계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- ② 본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 계약이 그대로 적용되고, 원 계약의 “본 계약”이라 함은 본 변경계약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본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원 계약을 의미한다.



WOORI BANK

제2조 (보수의 변경)

원 계약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보수는 연간 금삼천만원(W₩30,000,000)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하고, 매 결산기 단위로 해당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할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. 명확히 하면, 제5기 사업연도의 보수는, 2021년 9월 1일부터 본 계약의 시행일(2021년 12월 17일) 전까지의 기간은 원 계약상 연간 보수 금이천만원(W₩20,000,000)을 기준으로, 그 다음날부터 제5기 사업연도의 말일일 2022년 2월 28일까지는 위 변경된 연간 보수 금삼천만원(W₩30,000,000)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본 변경계약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고, 그 이전에는 원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기명날인을 위한 여백]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다.

2021년 12월 17일

“갑”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(주 소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, 세우빌딩 14층(여의도동)
(대표자) 대표이사 도 병 운



“을” 주식회사 우리은행
(주 소) 서울특별시 회현동 1가 203번지
(대표자) 대표이사 권 광 석
 자산수탁부장 김 형 욱



WOORI BANK

